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국 (DWC)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급여에 대한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보상청구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사실 정보 자료표 F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 미가입 고용주 급여 신탁 기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고용주는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 보험에 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UEBTF(보험 미가입 고용주 급여 신탁 기금)는 불법적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앓는 종업원의 보상청구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특별 기금입니다. UEBTF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고용주로부터 모든 급여의 회수를 시도합니다. UEBTF는 고용주의 보험 회사 또는 자가보험 고용주의 제삼자 관리자가 아닙니다.

UEBTF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단계씩 밟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사실 정보 자료표는 UEBTF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보 및 지원 [안내 16, 16 \(A\)](#) 및 [16 \(B\)](#)을 포함하여 한 둑음의 정보와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와 양식은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국 정보 및 지원 담당자로부터 또는 www.dwc.ca.gov에서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탐색 창의 “Quick Links” 아래에 있는 “find a fact sheet or I & A guide”를 클릭하십시오.

고용주가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부 고용주는 보험 회사를 사용하고 일부 고용주는 자가보험을 듭니다. 두 경우 모두 고용주는 자신의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 증권을 최저 임금 벽보 같은 다른 직장 정보를 게시하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벽보에는 고용주를 위해 보상청구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와 만료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해를 입은 날짜에 고용주가 보험에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88-229-2472번 WCIRB(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요율청)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caworkcompcoverage.com를 방문하십시오. 고용주가 자가보험을 들은 경우, 전화 (916) 574-0300번 노사관계부 자가보험제도부로 문의하거나 www.dir.ca.gov/osip를 방문하십시오.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고용주가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들지 않고 사업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주에 대한 엄청난 벌금의 부과, 사업 폐쇄, 형사 고발 및 심지어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경우,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 노사관계부 [근로 기준 시행부\(DLSE\)](#)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항의를 제기하십시오. 가까운 DLSE 사무소는 www.dir.ca.gov/dls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러한 급여를 청구하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DWC 1 보상청구서](#)(정보 및 지원 [안내](#) 참조)

1) 를 제출하여 고용주가 귀하의 병원비와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보십시오. 보험 없이 고용주가 귀하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귀하에게 직접 장애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개발부에 문의하여 캘리포니아 주 장애 보험(SDI)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손실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도 않고 귀하의 보상청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급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국 정보 및 지원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대응하려는 경우, 고용주와 합의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판사 앞에 출두하여 급여를 받기 위한 “지급 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및 지원 담당자가 귀하의 권리와 선택을 생각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UEBTF에 어떻게 급여를 신청합니까?

우선, 가까운 WCAB(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항소 위원회) 사무소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정보 및 지원 [안내 1](#)을 참조하십시오. UEBTF 보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귀하가 준수해야 하는 두 개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귀하 고용주의 신원(법적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송달”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귀하의 고용주에게 귀하의 보상청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UEBTF는 귀하 고용주의 이름이 정확하고 통지를 송달받았을 때만 귀하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판사 앞에 출두하여 급여의 “지급 판정서”를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UEBTF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한 지급 판정에 대해 알고 나서 10일 이내에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UEBTF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 및 지원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EBTF는 재량으로 판사가 지급 판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WCAB와 UEBTF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는 정보 및 지원 [안내 16](#)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주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 및 지원 [안내 16 \(A\)](#)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주에게 송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 및 지원 [안내 16 \(B\)](#)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급여를 받으려면 귀하 고용주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보상청구 내용을 송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미동록 근로자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든 없든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일할 수 없는 경우 회복하는 동안 치료와 한시 장애 지급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재해 및 사망의 결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 장애가 있는 경우 보충 해직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게 들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한 번에 한 단계씩 과정을 밟으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정보 및 지원 담당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법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 명단이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업종별 전화번호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또는 지역 변호사 협회에 확인하여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736-7401번으로 전화하거나 DWC 웹사이트 www.dwc.ca.gov에서 가까운 [정보 및 지원\(I&A\) 사무소](#)를 찾으십시오. 또한, [정보 및 지원 안내](#)를 내려받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워크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정보 자료표에 있는 정보는 본질에서 일반적이며, 법적 조언을 대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법의 변경 또는 귀하 사건의 특정 사실은 여기에 제시된 것과는 다르게 법률적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